

「2025년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」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

대구광역시 남구의 청년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「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0일

(사)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이사장

1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, 대구 남구 주요 상권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
- 지원규모 : 총 5개사 정도

유형	지원규모
②유형) 기창업	5개사 정도

※ 1개사 당 최대 2,000만원, 자부담금 5% 이상 필수

※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※ 본 공고는 「2025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」 중 ②유형(기창업자)에 대한 추가 모집 공고이며, ①유형(예비창업) 및 ③유형(성장지원)은 본 공고 대상이 아님

- 지원기간 : 2026년 4월 ~ 2026년 11월 (8개월)

※ 추가 공고에 따라 지원기간을 조정함

- 지원대상

유형	지원대상
②유형) 기창업	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

※ 세부 자격요건은 2. 신청자격 확인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지원금(시제품 제작비, 임차료 등) 최대 2,000만원

※ 자부담금 5% 이상(부가세 제외,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신청자가 부담)

※ 신규인력 채용 및 비용 지급 완료 후, 제출서류 구비하여 지원금 신청 시 지급

※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,
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2 신청 자격

□ 신청 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유형	신청자격
②유형 기창업	① 대구광역시 남구를 본사 소재지로 하는 (공고일 2026. 2. 10. 기준)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※ 개인 : 개업연월일 기준 / 법인 :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※ 단, 문화/예술/관광 분야일 경우 10년 이내 ② 청년(채용일 기준 39세 이하)을 1명 이상 채용 예정인 기업 또는 소상공인 ※ 협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함 ※ 채용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대체 채용하여야 하며, 미채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③ 도시형 산업분야 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 및 소상공인

※ [별첨1] 참여 대상 업종 및 [별첨2] 참여 제한 대상 업종 참조

□ 참여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
-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,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,
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
- 신청기업이 휴·폐업 중인 경우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
-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
 ※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,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하여야 함(캡처본)
- 2025.12.1. 자 통합공고에 지원하여 미선정된 기업
-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3

지원 내용

□ 지원기간 : 2026년 4월 ~ 2026년 11월 (8개월)

□ 지원조건

- ②유형) 기창업 :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년 신규 채용 완료

※ 지원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

※ ②유형의 경우 협약기간 동안 채용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, 채용 청년이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대체 채용하여야 함
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1개社당 2,000만원 및 1:1 맞춤 컨설팅 지원

지원내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- 사업화 자금 : 1개社 당 최대 2,000만원, 자부담금 5% 이상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비목</th> <th>비목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</td> </tr> <tr> <td>외주 용역비</td> <td>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</td> </tr> <tr> <td>임차비</td> <td>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</td> </tr> <tr> <td>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</td> </tr> <tr> <td>지급 수수료</td> <td>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</td> </tr> <tr> <td>교육 훈련비</td> <td>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</td> </tr> <tr> <td>광고 선전비</td> <td>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</td> </tr> <tr> <td>4대 보험료</td> <td>- 청년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목	비목 정의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임차비	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교육 훈련비	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	광고 선전비	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	4대 보험료	- 청년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
	비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				
	재료비	-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(개발과정 및 샘플 제작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) ※ 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																	
	외주 용역비	-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, 시제품 제작 또는 사업아이템 고도화를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/개발하는 비용 ※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, 용역계약서 작성																	
	임차비	- 공간 임차비용 : 사무실 또는 매장 임차비 - 장비 임차비용 : 제품 생산 관련 장비 임차비 등 ※ 자산 취득 성격이 있는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 원칙																	
	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																
	지급 수수료	- 전시·박람회 참가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술이전비, 컨설팅비																	
	교육 훈련비	- 대표자 및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교육 또는 경영 관련 교육 이수 비용																	
	광고 선전비	- 사업아이템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 (CI 제작, 영상, 카탈로그 제작, 온·오프라인 광고비 등)																	
4대 보험료	- 청년 신규 채용 시 발생하는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																		
※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 지원 불가																			
※ 상기 비목 이외 지원 불가																			
※ 임차비(공간+장비) 한도 월 40만원 이내(자부담 20% 필수)																			

지원내용	세부내용
	- 예) 공간임차비 30만원, 장비임차비 10만원 신청 → 가능 ※ 사업화 자금의 2,000만원의 총 5% (100만원) 자부담금 필요 예1) 임차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- 외주용역비 2,000만원, 자부담금 100만원 예2) 임차비를 신청하는 경우 - 외주용역비 1,600만원, 자부담 20만원 임차비 400만원, 자부담금 80만원(20% 자부담)
1:1 멘토(컨설팅)	창업자의 사업 내용에 맞는 1:1 맞춤형 멘토 또는 컨설팅 제공
네트워킹	사업관계자 및 주변 상인들과의 네트워킹 제공

※ 지원기간 후 1년 이내 남구 외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

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선정 방법

□ 평가절차 : 총 2단계 평가(서류평가 → 발표평가/현장실사) 진행

유형	평가방법
②유형) 기창업	① 서류평가 :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 (3배수) ② 발표평가 :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(1배수 + 후보 3) ③ 현장실사 : 사업장 실존 여부 확인(발표평가 합격자에 한함) ※ 기간 내 청년 채용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 기회 부여

□ 평가방법 : 전문 평가위원회 구성

○ (요건검토)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신청 자격 등 요건 검토

○ (서류평가)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규모의 3배수 이내를
고득점 순으로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※ 서류평가 합격자 개별 통보, 동점자 발생 시 모두 발표평가 자격 부여

○ (발표평가)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심층 평가 진행

※ 발표평가는 기업 대표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

※ 평가시간 : 기업별 15분 이내(발표 5분 이내 + 질의응답 10분 이내)

※ 평가방법 :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함(단, 비상상황 발생 시 온라인으로 변경)

○ (최종선정)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

※ 선정평가 결과 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
경우, 선정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 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(창업)
동기, 사업화 전략,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

□ 평가일정

○ 서류평가 실시 : 2026. 3. 5.(목)

○ 서류평가 통보 : 2026. 3. 6.(금)

○ 발표평가 실시 : 2026. 3. 12.(목)

○ 발표평가 통보 : 2026. 3. 13.(금)

○ 현장실사 : 2026. 3. 17.(화) ~ 3. 18.(수)

○ 선정통보 : 2026. 3. 20.(금)

※ 각 단계별 합격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이며, 상기 일정은
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발표자료(PPT)는 서류 합격자(개별 통보)에 한해 3. 10.(화), 17:00까지 이메일로
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처리 함

5

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6. 2. 10.(화) ~ 2026. 2. 26.(목),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hope1953@hanmail.net

※ 전자우편 접수 후, 유선(☎ 053-242-1953)으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
미확인 시 접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사업 참여 신청서	【서식 1】
2	확약서	【서식 2】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【서식 3】
4	사업계획서	【서식 4】
5	사업자등록증 사본	
6	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 ※ 홈택스 접속 → 증명·등록 신청 → 민원 증명 → 사업자등록변경내역 (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: 상호, 사업장 소재지, 업종 모두, 주민등록번호 공개)	
7	(신청일 기준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국세 : 홈택스 접속 / 지방세 : 정부24 발급	개인사업자의 경우,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발급
8	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완납증명서 ※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접속	
9	(신청일 기준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	
10	최근 2년('24~'25)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※ 창업,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	
11	최근 2년('24~'25)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※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(기준일 ① 2024.12.31.~2024.12.31. ② 2025.12.31.~2025.12.31.)	
12	사업(창업아이템) 관련 수상 및 특허 서류 등	해당 시 제출

※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파일(PDF)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이외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6

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며, 신청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
-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허위 등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거나, 사업 운영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협약 해지(취소) 및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
- 대표자의 사망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, 대표자 변경 시 선정(협약)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는 사업종료 후 5년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
7

문 의

- 문 의 처 : (사)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
 - 김민지 팀장 ☎ 070-7862-0926
 - 박연수 연구원 ☎ 053-242-1953

1 도시형 산업분야

- 도시(대도시, 중소도시)라는 공간적 기반을 특성으로 도시만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,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산업
- 도심 내 또는 근교에서 오랜기간 산업 활동을 하면서 집적지를 형성, 경쟁력이 강화(특화)된 산업
 - 대구 도시형산업은 소비재·최종재 산업으로 대구의 도시경쟁력 및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산업분야이며, 지역특화 제조업(식품/화장품, 토털패션 등)과 대도시형 서비스업(생산자서비스, 프랜차이즈/유통, 문화/관광 등)으로 구성됨

〈도시형 산업분야 업종코드(한국표준산업분류)〉

구분	업종코드	산업세세분류	업종코드	산업세세분류
지역특화 제조업	10121	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0897	건강기능식품 제조업
	10122	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(가금류 제외)	108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
	10129	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(가금류 제외)	10901	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
	10301	김치류 제조업	10902	배합 사료 제조업
	10302	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	10903	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
	10309	기타 과실·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1111	탁주 및 약주 제조업
	10513	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	11209	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
	10519	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	18129	기타 인쇄관련 산업
	10520	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	20421	계면활성제 제조업
	10601	떡류 제조업	20422	치약,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
	10602	빵류 제조업	20423	화장품 제조업
	10603	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	20493	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
	10701	도시락류 제조업	20495	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
	10709	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	204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
	10820	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	21220	한의약품 제조업
	10831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	21301	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
	10891	커피 가공업	27195	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
	10892	차류 가공업	27301	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
10895	인삼식품 제조업	33110	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	
10896	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	-	-	
대도시형 서비스업	37011	하수 처리업	75122	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
	71600	기타 전문 서비스업	75210	여행사업
	73303	사진 처리업	75290	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
	73902	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	75310	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
	73903	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5320	보안시스템 서비스업
	73905	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	75911	문서 작성 및 복사업
	73909	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	75919	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
	74100	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	75991	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
	74211	건축물 일반 청소업	75992	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	74212	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5994	포장 및 충전업
	74220	소독,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	75995	온라인 활용 마케팅 및 관련 사업지원 서비스업
	74300	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	75999	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
	75121	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	-	-

2 숙박 및 음식점업 : 일반 음식점, 커피 전문점, 제과점업, 숙박공유업 등 (참여 제한 대상 업종 제외)

※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한 업종의 경우 선정평가 시 심사에 따라 참여 가능할 수 있음

※ 위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별첨2**참여 제한 대상 업종**

연번	대상업종	분류코드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프랜차이즈 가맹점, 인터넷 창업,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	-